

# 당첨자 서류검수 안내문

## [신혼부부 특별공급]

### □ 서류접수

- 제출기한 : 2022.12.08(목)~2022.12.11(일) 16:00까지 (4일간)
- 제출장소 : 두류역 서한포레스트 견본주택 (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156-18번지 "두류역 서한포레스트" 견본주택)

▣ 구비서류 (당첨자 검수일 내 특별공급 구비서류와 계약체결 서류를 별도로 구비하여 견본주택에 접수하시기 바람.)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공동 서류		○	특별공급신청서, 서약서	청약자(본인)	* 견본주택 비치 - 인터넷 청약(청약Home)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
		○	특별공급확약서, 인터넷 청약동의서	청약자(본인)	* 견본주택 비치 - 인터넷 청약(청약Home)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
		○	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	청약자(본인)	* 견본주택 비치
		○	청약통장 순위 (가입)확인서	청약자(본인)	•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(가입) 내역 발급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페이지(www.applyhome.co.kr)에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(단, 국가유공자, 국가보훈대상자,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) - 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
		○	신분증	청약자(본인)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※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(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)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(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)
		○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청약자(본인)	*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/ 용도 : 주택공급신청.
		○	출입국사실증명서 (여권번호 필수 기재발급)	청약자(본인)	* 계약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민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. (※기관추천 특별공급 해당기관장이 정하여 선정하므로 해당서류는 제출 제외) ※기록대조일: "본인 생년월일 ~ 입주민모집공고일"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
		○	주민등록표등본 (상세)	청약자(본인)	•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, 세대주 등록 및 변경일자 등 모두 포함하여 "상세" 발급. ※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(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)
		○	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	청약자(본인) 및 배우자	*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포함)를 표기하여 "상세"로 발급. • 이혼·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청약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. - 배우자 및 자녀,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※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
		○	주민등록표등본 (상세)	배우자	*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(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름)
	○	주민등록표초본 (상세)	배우자	*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•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"상세" 발급. ※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(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)	
	○	복무확인서	청약자(본인)	• 입주민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-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(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, 2순위)의 청약자격과 입주민모집요건을 충족 시,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한 것으로 봄.	
부동산 소유현황 등 (※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중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)		○	부동산소유현황	청약자(본인) 및 세대원	• 소득기준은 초과하나,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- 발급기관: 대법원 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 > 등기열람/발급 > 부동산 > 부동산소유현황 ※ 발급 시 부동산소유현황 물건지(토지, 건축물)에 대한 초기 페이지 스크린샷 인쇄. ※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부 표기
		○	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	청약자(본인) 및 세대원	• 부동산자산이 이전~ 현재까지 전부 발급. ※ 부동산자산이 없어도 발급가능. ※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부 표기
		○	등기사항전부 증명서	청약자(본인) 및 세대원	• 소득기준은 초과하나,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- 토지 또는 건축물 부동산 소유에 따른 등기사항발급. - 발급기관: 대법원 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 ※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부 표기
		○	재산세 과세 내역서 (오피스텔, 상가 등 건축물)	청약자(본인) 및 세대원	• 부동산자산 중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- 발급기관: 해당 시군구청에서만 발급가능. ※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부 표기
		○	주택 공시가격 (아파트 및 단독주택 등 주택)	청약자(본인) 및 세대원	• 부동산자산 중 건축물 및 토지가액을 합산한 주택가격 - 발급기관: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(www.realtyprice.kr)
		○	토지대장 또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서(토지)	청약자(본인) 및 세대원	• 부동산자산 중 토지의 공시지가 - 발급기관: 정부24 또는 주민센터. (본인 신분증 지참하여 발급) ※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부 표기
		○	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및 축산업허가증 등 (부동산 자산 제외사항)	청약자(본인) 및 세대원	•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시, 구, 읍, 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이면서, 농업인 및 농지 소유자 • 농업 ①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- 발급기관: 정부24 또는 주민센터. (본인 신분증 지참하여 발급) ② 해당 농지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- 발급기관: 대법원 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 • 축산업 ① 축산업 허가증 - 발급기관: 토지e음(www.eum.go.kr) > 토지이용계획 > 지번입력 > 소재지 및 도면 등 인쇄 ② 해당 축산업 사업장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- 발급기관: 대법원 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 ※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부 표기
		○	토지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등 (부동산 자산 제외사항)	청약자(본인) 및 세대원	• 공부상 도로, 구거,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• 중중소유 토지(건축물 포함)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부동산의 사용, 처분 등이 금지된 경우 등 제한을 받는 경우. ① 해당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- 발급기관: 대법원 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 ② 현장 사진 ③ 해당 토지이용계획 - 발급기관: 토지e음(www.eum.go.kr) > 토지이용계획 > 지번입력 > 소재지 및 도면 등 인쇄 • 신규 분양권 등(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) ※일반자산가액으로 분류되므로 포함되지 않음. ※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부 표기
신혼부부 특별공급		○	자격요건 확인서	청약자(본인)	• 혼인 신고일, 자녀수,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금액 소득 확인(견본주택 비치)
		○	혼인관계증명서 (상세)	청약자(본인)	• 혼인신고일 확인(상세내역 발급)
		○	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	청약자(본인) 또는 배우자	•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(임신증명서류는 입주민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)
		○	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 관계증명서	청약자(본인) 또는 배우자	• 입양의 경우
		○	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	청약자(본인) 또는 배우자	• 견본주택 비치
		○	재직증명서	청약자(본인) 및 만19세이상 세대원	•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입주민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인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(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포함) 전원 제출
		○	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	청약자(본인) 및 만19세이상 세대원	•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그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,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(발급처: 국민건강보험공단) ※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과거 변동사항 등 전부 표기하여 포함하여 발급. •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(단,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원 소득입증서류) 아래 [표1 소득증빙서류 참조] ※ 전년도 소득이 없고, 현재 근로자가 아닌 경우: 전년도 사실증명(신고사실 없음)을 반드시 제출. ※ 현재 또는 작년 출산 휴가를 받았을 경우: 출산 전월 휴가급여지급 명세서(월별)
	○	소득증빙 서류	청약자(본인) 및 만19세이상 세대원	• 견본주택에 비치 (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)	
	○	비사업자 확인각서	청약자(본인) 및 만19세이상 세대원	• 견본주택에 비치 (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)	
	○	부동산소유현황	본인 및 세대원	• 소득기준은 초과하나,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• (발급기관) 대법원 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 > 등기열람/발급 > 부동산 > 부동산소유현황 • 발급 시 (주민)등록번호 공개에 체크	
제3자 대리인 (당첨자검수일/계약시) (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)		○	위임장	청약자(본인)	•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(견본주택 비치)
		○	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	청약자(본인)	• 용도 : 아파트 계약 위임용.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•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
		○	신분증 및 인감	대리인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•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증

※ 상기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민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및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된 원본 서류만 제출 가능합니다.  
※ 주민등록표 등·초본 발급시 반드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  
※ 입주민대상자의 자격검증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체의 추가 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# 당첨자 서류검수 안내문

## [해외근무자(단신부임) 입증서류]



### ■ 해외근무자(단신부임) 입증서류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해외근무자 (단신부임)	○		해외체류 증빙서류	청약자 (본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- 파견 및 출장명령서</li> <li>•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,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</li> </ul> </li> <li>• 근로자가 아닌 경우(※아래사항 반드시 제출)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</li> <li>※유학, 연수, 관광,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,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</li> </ul>
		○	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	청약자(본인) 및 세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</li> <li>※비자발급내역,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,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(계속하여 90일 초과)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</li> </ul>
		○	주민등록표등본 (상세)	청약자(본인) 및 직계존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</li> <li>•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, 세대주 등록 및 변경일자 등 모두 포함하여 "상세" 발급.</li> <li>※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(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)</li> </ul>
		○	주민등록표초본 (상세)	직계존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</li> <li>•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"상세" 발급.</li> <li>※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(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)</li> </ul>
		○	출입국사실증명서 (여권번호 필수 기재발급)	배우자 및 세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이 생업, 학업 등 종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,</li> <li>•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.</li> <li>(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 자녀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 필요)</li> </ul>